## 사범계학과 복수전공에 관한 운영 지침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유원대학교(이하'본교'라한다)의 사범계학과 복수전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지침은 사범계학과의 학생으로서 졸업 후에 정교사(2급)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적용한다.

제3조(사범계학과) 본교는 [별표 1]과 같은 사범계학과를 둔다.

제4조(이수대상) ① 이 지침이 정하는 복수전공 대상은 사범계학과 학생 이어야 한다.

**제5조(선발방법 및 기준)** ① 복수전공이수자의 선발방법은 학칙 제29조2(제2전공), 학사내규 제48~50조를 준용한다.

-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1학기부터 기간 내에 복수전공 이수신청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사범계학과의 복수전공 이수 가능 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33퍼센트로 제한한다(소수점이하 절상).
- ④ 복수전공 성적 기준은 성적증명상의 총 평균 평점 3.00이상인자로 한다.
- ⑤ 사범계학과 편입생의 경우는 복수전공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선발한다.

**제6조(복수전공 이수자 확정)** 위 제5조에 의해 선발된 자는 명부를 총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복수전공자로 확정된다.

**제7조(이수학점)** ① 복수전공이수자가 취득해야 할 해당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복수전공 이수자 : 해당 학과의 전공 50학점(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)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2. 특수학교(초등 또는 중등)이수자 : 해당 학과 80학점 이상[특수교육(공통)42학점(기본이수과목 포함) + 특수(초등 또는 중등)전공 38학점(교과교육영역 및 기본이수과목 포함)]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3. 복수전공이수는 학칙 제29조2(제2전공), 학사내규 제50조를 준용한다.
- ② 복수전공자 특수학교(초등 또는 중등) 이수자가 취득해야 할 법정교직 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교직이론,교직소양,교육실습 과목은 주전공에서 이수한 것으로 대체하여 인정한다.
- 2. 교과교육영역 : 복수전공자는 해당 "표시과목별 교과교육론, 표시과목별 교과교재연구 및지도법, 표시과목별 교과논리및논술, 표시과목별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3.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현장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, 복수전공의 학교현장실습은 면제한다. 단,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하다.

제8조(복수전공 자격상실) 복수전공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

## 이수자격을 상실한다.

- ①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포기원(별지 제5호 서식)을 제출한 자
- ② 교직과정 이수 중 학칙에 의거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된 자
- ③ 교직과정 이수 중 전과한 자
- ④ 교직과정 이수 중 제적된 자

**제9조(복수전공 중도 포기자의 학점인정)** 복수전공 이수를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10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준한다.

- 부 칙 -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**2014년 3월 1일**부터 시행한다.

## [별표 1]

구 분	학 과	자격종별 및 표시과목	설치년도
사범계학과	초등특수교육과	특수학교(초등) 정교사(2급)	2003년도
	유아교육과	유치원 정교사(2급)	2005년도
	중등특수교육과	특수학교(중등) 정교사(2급) 표시과목	2006년도

복수전공			소속학과		복수전공
			지도교수	학과장	학과장
이수신청	!서	인			
학 과				학 년	
학 번	성 5			성 명	
주민등록번호	-				
복수전공학과					
(제2전공)					
복수전공 이수시기	학년	크도	학	기부터	

\*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가 졸업 전까지 복수전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

복수전공(제2전공) 사항 (※ <mark>교직과정</mark> 해당자만 작성)							
교원양성	예( □ )	자격종별		표시과목			
과정	MI( L)	ハっつこ		표시되그			

위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사자격기준에 의하여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.

- 1.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가능하여야 함.
- 2.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함.
- 3. 복수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에 대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, 성적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.
  - -2009~2012학년도 입학자 :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
  - -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: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, 교직 평균 80점 이상

학칙 제 29조 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

(서명 또는 날인)

## 영 동 대 학 교 총 장 귀하